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1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기보유주식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차규근의원안)	3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01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0. 30.
- (3) 회 부 일 : 2024. 10.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 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보유주식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차규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장기보유주식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안 제101조 신설) -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5% 감면 ☐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안 제104조의6 신설) -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결손금 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금융투자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차규근의원안 2024. 10. 30. 발의(의안번호 5019)

☐ 개정안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5%를 감면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에 대하여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는 25%로 하여 2단계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누진과세를 통해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금융투자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수직적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¹⁾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검토보고, 2020. 11.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와 같이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누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상품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5년에도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계속 부과되므로²⁾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전후로 이중적인 세부담을 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구분	2000년	201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코스피	0.1%	0.08%	0.08%	0.05%	0.03%	0%
코스닥	0.25%	0.23%	0.23%	0.20%	0.18%	0.15%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0.15% 부과됨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가입으로 전세계에 개방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사실상 투자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부과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 먼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5%를 감면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유인을 증진하고 장기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특히, 성장주 같이 장기간 리스크를 감수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똑같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위험자본보다는 확실히되는 투자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저율로 과세하는 미국, 프랑스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주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세율]

구분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적격배당소득, 장기보유(1년 이상) 자본이득	분리과세(15·20%)	
비적격배당소득, 단기보유(1년 미만) 자본이득	종합과세(10~37%)	

* 2024년 과세연도 기준

* 자료: 이예지,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4. 7. 24.

다만, 금융상품의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은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세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³⁾ 장기투자자가 경영권 확보와 관련 있는 대주주인 경우 장기보유 세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역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와 농어

3) 이예지,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4. 7. 24.

4)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세무학연구 제38권 제2호, 2021

촌특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유인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공제되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을 얻지 못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그대로 납부하게 되므로 조세형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는바, 논의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48